

국세청 공무원[임기제 7급] 채용 공고

국세청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9월 2일

국 세 청 장

1 임용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 (근무지)
세무주사보 (일반임기7급)	1명	채용일로부터 1년	국제조세관리관 국제협력담당관(세종)

※ 관련 법령에 따라 당해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임용기간 연장 가능

2 임용예정직무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영문에디터	세무주사보 (일반임기7급)	○ 주요 조세행정 협의체 등의 국제조세 관련 회의 참석, 통번역 ○ 외국 과세당국과의 회의 참석, 통·번역 ○ 국세청장 통역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전문경력관 규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18세 이상(2007.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5.10.14.) 기준]

채용분야	직위별 요건		
영문 에디터	응시 자격 요건	학 위	①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전문대학 관련분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학위]: 영어학과, 영어영문학과, 영어교육학과, 영어 통·번역 학과 등 영어 관련학과 [관련분야 경력]: 영어 통·번역, 외교통상, 국세협력 분야 근무경력
		경 력	①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② 8급 또는 8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③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관련분야 경력]: 영어 통·번역, 외교통상, 국세협력 분야 근무경력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학위, 경력)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단, 응시요건은 (학위①/학위②/경력①/경력②/경력③) 중 반드시 하나만 선택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5. 10. 14.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전공분야 및 학위논문을 기준으로 함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 관련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경력'요건의 경우,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을 합산할 수 없음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다. 우대요건 등 [원서접수 마감일(2025.9.12.) 기준]

우대요건

- 응시요건 충족 이후의 관련분야 근무경력 (기간별 차등우대)
- 통·번역 대학원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우대
- 어학성적 우수자 (어학성적별 차등우대)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우대요건,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5. 9. 12.)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우대요건 관련

- (근무경력) 응시요건 충족 후 근무경력으로, 근무기간별 차등 배점

- * 관련분야 실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재직)증명서가 제출되고, 근무기간, 담당업무(관련분야 경력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주당 근무시간, 근무부서, 직위, 담당업무, 발급확인자의 서명과 연락처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다만, 경력(담당업무)이 불명확(간략)하게 되어 있을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직무기술서 상에서 요구하는 주요업무와 관련있는 경력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 *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하며,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증명',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을 추가 제출하여야 함
-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 * 경력증명서 발급 확인자의 서명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
- *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8호]를 이용하되, 별도 서식이 있는 경우 해당 서식 가능
-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통·번역대학원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어학성적) 점수별 차등 우대

- * 유효기간(2년, 인사혁신처 사이버고시센터에 사전등록한 경우 5년) 범위 내 성적으로 원서접수 마감일('25. 9. 12.)까지 발표된 성적 중 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한 성적에 한함
- * 어학시험성적별로 아래 기준 성적 이상인 경우 우대

시험종류	TOEFL		TOEIC	TEPS (제248회 이후)	G-TELP	FLEX
	IBT	PBT				
점수기준	105점	620점	900점	370점	LEVEL2의 90점	792점

☞ 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 관련 사항은 “붙임2” 참조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또는 6배수)로 합격자 결정

응 시 자	6명 ~ 10명	11명 이상
합 격 자	5배수	6배수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①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국가에 대한 헌신과 열정적인 태도, ③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윤리의식과 책임성, ⑤업무전문성
 - **(평가방식)** 면접심사 당일 영어 통·번역에 대한 세부평가*를 실시한 후,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 문서 번역능력 사전 평가 및 개별면접시 의사전달·통역능력 평가를 위한 인터뷰를 실시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면접결과 공개)** 면접자가 요청한 경우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하’로 평정한 요소는 공개(단, 평가요소별 상·중·하 개수 등 비공개)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5.9.2.(화) ~ 9.12.(금)	'25.9.3.(수) ~ 9.12.(금)	'25.9.30.(화)	'25.10.14.(화)	'25.10.29.(수)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5. 9. 3.(수) ~ 9. 12.(금) 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우)30128 세종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채용담당 (응시원서 재증) / 문의전화 : 044-204-2863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나. 제출서류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응시자 제출서류 양식 1부	○ 별지서식 제1호
	응시원서 1부	○ 별지서식 제2호
	이력서 1부	○ 별지서식 제3호
	자기소개서 1부	○ 별지서식 제4호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지서식 제5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6호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각 1부	○ 별지서식 제7호
	주민등록초본(병력사항 기재)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학위증 및 최종 학력 졸업증명서 사본 각 1부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별지서식 제8호
	통·번역 대학원 학위증 사본 및 학위논문요약서(우대요건)	○ 별지서식 제9호
	어학증명서 사본 1부(우대요건)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 ③ 4대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국세청홈택스 HomeTax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계산서·영수증·카드 > ① 증명·등록·신청 > 세금신고 > 납부·고지·환급 >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상담·불복·제보 > 세무대리·납세관리 >

나의 홈택스 전체 메뉴

② 즉시발급 증명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기타 민원 증명
민원증명 조회/관리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부가가치세 관련 신청·신고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재산세 관련 신청·신고
원천세 관련 신청·신고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사실여부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서 지정사업자등록번호 직권말소
신고사실없음
총사업자등록내역

공동사업자내역
사업자등록변경내역
주택자금 등 소득공제사실여부

대표자등록내역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제납내역

③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국세청홈택스 HomeTax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계산서·영수증·카드 > ① 증명·등록·신청 > 세금신고 > 납부·고지·환급 >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상담·불복·제보 > 세무대리·납세관리 >

나의 홈택스 전체 메뉴

② 즉시발급 증명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기타 민원 증명
민원증명 조회/관리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부가가치세 관련 신청·신고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재산세 관련 신청·신고
소비세 관련 신청·신고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즉시발급 증명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모범납세자 증명
③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소득확인증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원사업장증명
소득확인증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서(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서(청년희망적금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소득금액증명신청서

· 소득금액증명원은 국원(영문) 발급가능합니다. (영문사양이 없습니다.)
· 수입증서(소득·세액) 증명은 세무대리인, 개인사업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매년 새로운 사업정보 신청에 대한 서비스까지 안내는 해당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분 근로소득지출, 연금상환한 사업소득지출, 연금상환한 종교인소득지출, 연금상환한 연금소득지출 소득금액증명은 2025.5.3부터 발급가능합니다.
· 2024년분 종합소득세신고자인 소득금액증명은 2025.7.3부터 발급가능합니다.

기본 인적 사항

주민등록번호 800101-*****
성명 테***
전화번호 064 - 333 - *****
휴대전화번호 010 - 0000 - *****
이메일 123123 @naver.com

신청내역

· 발급유형 ☒ 민원증명 ☐ 영문증명
· 과제기간 2023 - 년 ~ 2023 - 년
· 원천징수자료 전체표시 ☐ 있음(근로소득자만 해당)
· 소득합계제외(소득·세액) ☒ 공제 ☐ 비공제
· 사업종도 - 신청 - >
· 제출처 - 신청 - >

이와 함께는 2024년 09월 대통령표창(훈) 수상한 포명내게합니다. (1 / 2)

발급번호	소득금액증명	처리기간
7480-970-0468-997	(2023년 귀속)	즉시
성명	테스트게인3(아주개)	주민등록번호
주소	경기도 부천시 *****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현황 (단위: 원)

구분	종합과세						합계	비고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수입금액								
소득금액								

· 종합과세 소득금액은 이월결산증명서 등제외한 합계금액입니다.
· 본과과세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한 본과과세 소득(2월분부터 12월분까지)과 제과과세 소득이 포함된 과세표준으로 과세된 과세소득의 합계입니다.
· 추계과세 : 종합과세 본과과세의 결정지연 합계입니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현황 [소득합계, 신고(결정·경정)액, 종합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단위: 원)

구분	소득 합계		지급받은 총액	소득금액	결정지연	비고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근로소득	산출금장인원명	814-91-89155	1,892,100,000	1,892,100,000	822,800,000	(연말정산)
근로소득	전감구분 외	124-91-98845 외	16,891,872	16,891,872	84,206	(일용근로)

-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5. 10. 30. ~ 11. 14.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5. 11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1년
 - ※ 관련 법령에 따라 당해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임용기간 연장 가능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 채용직위 연봉 한계액

구 분	2025년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상한액	하한액
일반임기제 7호	66,591	31,956

-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상기 연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연봉외 급여 지급
 -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9 안내 및 참고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또는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임기제는 원칙적으로 전보가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 중 경력(우대요건)에 대한 내역이 있는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경력 및 재직에 대한 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중 1개 자격 득실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대한 채점기준 및 채점결과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논문, 학위 및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내용 관련 :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044-204-2863)
 - 채용절차 관련 : 국세청 인사기획과(044-204-2196)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영문 에디터		세무주사보 (일반임기7급)	1명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세종)
주요 업무		○ 주요 조세행정 협의체 등의 국제조세 관련 회의 참석, 통·번역 ○ 외국 과세당국과의 회의 참석, 통·번역 ○ 국제청장 통역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필요 지식		○ 영어 대화, 문서 번역 및 작성 등 영어회화, 독해, 영작 관련 지식 ○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에 관한 이해 등 관련 지식 ○ 조세조약, OECD 관련지침 등 국제거래 관련 전문지식 ○ 이상의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세법 및 회계 등 기초지식		
응시 자격 요건	학 위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학위] 영어학과, 영어영문학과, 영어교육학과, 영어 통·번역 학과 등 영어 관련학과 [관련분야 경력] 영어 통·번역, 외교통상, 국제협력 분야 근무 경력		
	경 력	1.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2.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 3.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관련분야 경력] 영어 통·번역, 외교통상, 국제협력 분야 근무경력		
우대 요건		○ 관련분야 경력자 우대 (기간별 차등우대) ○ 통번역 대학원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우대 ○ 영어 능통자로서 어학성적 우수자 우대 (어학성적별 차등우대)		

※ “응시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직위별로 응시요건에 따라 필수서류가 다르므로, 직무기술서 등을 참고하여 필수사항은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구 분	내 용
1. 응시자 제출서류 양식(별지서식 제1호) : 필수서류	○ 작성목록(총괄표)
2.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필수서류	○ 응시수수료 - 5급 이상 : 10,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6·7급, 연구사 : 7,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8·9급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전문경력관(가군) : 7,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3.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필수서류	○ 별지서식 제3호 작성 -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가점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4.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필수서류	○ A4 2매 이내로 작성
5.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5호) : 필수서류	○ 별도 양식 없으며 A4 요약서 1매 + A4 5매로 작성 (총 6매 이내)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 자필 서명 필수
7.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별지서식 제7호)	○ 자필 서명 필수

구 분	내 용
8. 주민등록초본	○ 병력사항 기재
9.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 해당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10. 경력(재직) 증명서 1부 (별지서식 제8호)	○ 해당자에 한함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11. 통·번역 대학원 학위증 사본 및 학위논문요약서 (별지서식 제9호)	○ 해당자에 한함
12. 어학증명서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사용금지)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자 제출서류 양식			
성 명	채용직위	임용예정직급	근무예정기관(부서)

■ 작성목록(총괄표)

목 록	작성 여부
1. 응시자 제출서류 양식	
2. 응시원서	
3. 이력서	
4. 자기소개서	
5. 직무수행계획서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7. 개인정보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8. 주민등록초본(병력사항 기재)	
9. 학위증 및 최종 학력 졸업증명서 사본 각 1부	
10.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각 1부(우대요건 포함)	
11. 통·번역 대학원 학위증 사본 및 학위논문요약서(우대요건)	
12. 어학증명서 사본 1부(우대요건)	

* 내용을 작성한 항목에 대하여 작성 여부 란에“○” 표시

【별지 제2호 서식】

(앞 면)

응시원서 (원본)

국세청장 귀하

본인은 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응시원서(원본)			
응시직급 및 분야		세무주사보(일반임기제) / 영문예디터	
응시자격		학위1, 학위2, 경력1, 경력2, 경력3 중 택1	
※응시번호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소	(우)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응시표 ()시험			
응시직급 및 분야		세무주사보(일반임기제) / 영문예디터	
응시자격		학위1, 학위2, 경력1, 경력2, 경력3 중 택1	
※응시번호		성명	(한글) (한자)

주의사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작성요령

- ① 응시직급 및 분야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하는 직급과 기재
(예) 세무주사보(일반임기제)
 - ② 응시자격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의 응시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응시자격요건 중 선택
 -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④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 ⑥ 정부수입인지 : 5급 이상은 10,000원, 6·7급/연구사/전문경력관은 7,000원,
8급 이하는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부착하
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이 력 서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영문예디터 (임기제7급)	응시 자격 요건	☐ 학 위 1	☐ 학 위 2	☐ 경 력 1	☐ 경 력 2	☐ 경 력 3	성명	
----------	----------	----------	------------------	----------------	--------------------------------------	--------------------------------------	--------------------------------------	--------------------------------------	--------------------------------------	----	--

학 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영어영문		'00.00.00		○○ 석사	
경 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 (○○과)	16.1.1. ~ 17.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6.5.1.~12.31.(질병휴직)		팀장 (6급)	상세히 작성	주 40시간 근무

경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 (○○과)	예) 19.5.1.~21.10.10. (질병휴직 20.1.1.~20.6.30.)	대리 (7급)	예) 영어 순차 통역	예) 주 40시간
학 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종류
	영어통번역		'00.00.00		석사
어 학	시험명 (영어만 기재)	등록번호	응시일자	점수	영문성명

※ 우대사항란의 경력은 응시자격으로 제출한 경력 외 별도경력만 작성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②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 작성
- ③ 응시자격요건 :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의 응시자격 요건 중 선택
- ④ 응시자격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학위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만 기재

- 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학위종류·취득(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학사-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기재

경력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예. 학사학위 취득 후 5년의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 응시자격 '경력3'으로 응시하는 경우,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1년의 경력은 '2.응시자격'의 경력란에 기입하고,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4년의 경력은 '3.우대요건'의 경력란에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기간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를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전임'(통상근무자) 또는 '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표시하되, 비전임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 예시) 통상근무시간이 주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 2년 인정

⑤ 우대요건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을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경력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

학위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학위만 기재

- 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학위종류·취득(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기재

어학점수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영어과목 어학시험에 대한 점수만 기재

- 어학시험 : TOEFL, TOEIC, TEPS, G-TELP, FLEX

- TOEFL(PBT 620 이상, IBT 105 이상), TOEIC(900 이상), TEPS(제248회 이후 370 이상), G-TELP(Level 2의 90점 이상), FLEX(792 이상)

- 검정기관별 유효기간(2년, 인사혁신처 사이버고시센터에 사전등록한 경우 5년) 범위 내 성적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된 성적 중 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한 성적에 한함

【별지 제4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성명		응시직급 및 분야	
----	--	-----------	--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직무수행 계획서

성명		응시직급 및 분야	
----	--	-----------	--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 분량은 요약서 A4 1매 + A4용지 5매(총 6매 이내)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수상실적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세청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병역사항,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국세청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경력(재직) 증명서

인적 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경력 사항	근무기간		업체명 (근무처)	직위 (직급)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	비고
	부터	까지					
		'19.6.30	'22.7.1	(주) 00	대리		주40시간 근무
상별 사항	포 상				징 계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25년 월 일

증명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발급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연락처	

확인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연락처	

- ① 담당업무 :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 ② 비고 : 기타 참고 사항이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

※ 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 발급확인자 2인 이상의 서명 및 연락처가 포함된 근무처 별도
서식이 있는 경우 해당 서식 사용 가능

【별지 제9호 서식】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학위 논문 요약서(석사.박사)

성명	직무분야	응시직급
학위개요	○ 논문제목 ■ 한글명 : ■ 영문명 : ○ 심사 년월일 : ○ 취득대학/대학원명(세부전공) : ○ 지도교수 :	
주요내용 요약		
I. 연구목적 1. 가. 1) 가) (1) II. 연구내용 III. 연구결과의 활용도(구체적으로)		
본 논문요약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2025. . 응시자 : (인)		

※ 박사 및 석사 학위 건별로 작성 / 주요내용 요약은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논문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